

#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#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62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2010. 10. 8.  
제안자 : 이강호 의원  
(찬성자 15인)

## 제안이유

- 가. 최근 늘어나는 저소득주민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증가에 따라 실정에 맞는 복지제도를 확립하고
- 나.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적, 제도적 요건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.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3조)
- 다. 예산 범위에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규정함.  
(안 제4조)

##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
- 나. 비용추계서 1부.

##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및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“이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
2. “생활안정 지원”이란 생계, 주거, 각종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
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
3. 그 밖에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을 포함한 타법에 의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

제4조(지원내용) ①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

1. 신입생 교복지원 등 교육관련 경비
2. 위문금·품
3. 월동대책비
4.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금·품 및 용역서비스
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, 지원의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.

제5조(지원대상자 조사) ① 군수·구청장은 지원의 결정 또는 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

② 본인 또는 그 친족,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

관계법령	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자치법 - 제22조(조례) 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복지사업법 - 제4조(복지증진의 책임)  <input type="checkbox"/> 국민기초생활보장법 - 제5조(수급권자의 범위)  <input type="checkbox"/>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- 제3조의2(차상위계층)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# 관계법령 발췌사항

## 【지방자치법】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 【사회복지사업법】

제4조(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.

## 【국민기초생활보장법】

제5조(수급권자의 범위)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.

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】

제3조의2(차상위계층) 법 제2조제11호에서 "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"이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.

# 【 비 용 추 계 서 】

## 1. 비용추계 요약

(단위 : 백만원)

비 목	'10년 예산액	'11년 예산액	증감	산출기초
<b>계</b>	<b>0</b>	<b>12,635</b>	<b>12,635</b>	
1) 비수급 빈곤층 생활안정 지원비	0	12,635	12,635	○ 산출내역 : 총 12,635,820천원 ① 1인 : 7,187가구 × 75천원 × 12개월 = 6,468,300천원 ② 2인이상 : 4,283가구 × 120천원 × 12개월 = 6,167,520천원

## 2. 비용추계 세부내역(2011년 신규사업)

### ● 소요예산 : 12,635백만원

- 산출근거 :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보고자료
- 지원수준 :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15%수준

(단위 : 천원)

가구원수	1인	2인이상
급여액	75	120

- 지원기간 : 12개월간 지원
- 재산기준 : 54백만원 이하

(단위 : 가구)

재산가액	가구원수 현황		
	계	1인	2인이상
54백만원 이하	11,470	7,187	4,283

- 산출내역 : 총 12,635,820천원
  - ① 1인 : 7,187가구 × 75천원 × 12개월 = 6,468,300천원
  - ② 2인이상 : 4,283가구 × 120천원 × 12개월 = 6,167,520천원
- ※ 제4조(지원내용) 중 교육경비, 위문금·품, 월동대책비, 용역서비스 등은 기존에 지원하던 항목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.